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동 기능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었고

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3명의 증원이 시달되었으며, 서창동 분동을 위한 정원 8명의 승인이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무원 총 정원 12명이 증가됨(546 → 558)

- 한시정원(5급) 존속기한 연장 1명
- 사회복지직 증원 3명(사회복지9급)
- 서창동 분동을 위한 정원 증원 8명
 - 행정5급 1명, 행정8급 6명, 기능10급 1명

나. 조례시행일(부칙 제1조)

- 한시기구 정원의 승인 효력이 2001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므로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1년 7월 1일로 함

다. 정원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 한시기구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검토의견

공무원 총 정원 12명의 증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 한시정원(5급) 존속기한 연장 1명

한시정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에

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 통보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미리 그 한시정원의 연장이 승인된 사항이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 한시기구의 보장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한시정원의 연장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며, 또한 이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직 증원 3명(사회복지9급)

사회복지직 증원 3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3조의2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社會福祉公務員 擴大配置 指針」에 따른 것입니다.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이 시달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달된 조직관리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그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원인원 3명은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 및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 당 1명을 배치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증감추세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적정히 배치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읍·면·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열악한 복지현실과 복지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향후 계속적인 복지행정의 수요증가, 지역 간에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3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 서창동 분동을 위한 정원 증원 8명(행정5급 1명, 행정8급 6명, 기능10급 1명)

이는 서창동 분동에 따른 정원 승인 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통보에 따른 것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간의 균등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할 때 8명의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과 한시기구 승인 효력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